



Tax Intelligence 7월호

2026.07.21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한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에도 저희 뉴스레터를 찾아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희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는 기업 경영 전략과 조세정책 및 조세전략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업과 정책 당국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정책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뉴스레터 “Tax Intelligence 7월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Editor's Note

- ▶ Editor's Note는 우리나라 조세법 분야의 권위자인 이창희 고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조세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과 통찰을 나누는 글입니다. 이번 7월호에서는 금융감독원의 4대 중점 회계감사 이슈인 국외매출, 재고자산 평가, 총당·우발부채 및 투자부동산 관련 사전예고 발표 내용과 그 배경 및 영향을 살펴봅니다. 또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들을 통해 법 해석의 영원한 딜레마인 ‘법 문언에 따른 엄격해석’과 ‘입법취지를 반영한 목적론적 해석’ 간의 갈등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2. Case Update

[1] 판례

- ▶ (i) 두 회사가 서로 상대방의 주식을 동시에 취득하면서 모회사가 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자회사가 된 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도 유효함
(ii) 해당 취득이 유효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모회사 주식은 무수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대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 ▶ (i)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이 어느 한 외국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을 위한 국별 국외원천

소득금액은 해당 결손금을 각국의 소득에 안분하여 차감한 금액임

(ii) 이와 같은 안분 차감 방식은 한·중 조세조약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에 위배되지 않음

- ▶ 이사 과정에서 새 주택에 이미 임차인이 있어 1년 내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시 전입하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특례는 새 주택 취득 당시 이미 존재하던 임대차계약에만 적용되며, 새 주택 취득 후 체결된 연장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 ▶ 중소기업 간 통합을 위한 사업의 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업장과 무관한 개인 채무를 함께 이전하고 그 금액만큼 주식을 적게 받은 경우, 해당 채무가 사업장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2] 전심결정례

- ▶ 완전자회사인 A사가 다른 완전자회사인 B사를 무증자 방식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 B사 주식도 합병으로 소멸하므로, 완전모회사는 B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유권해석

-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공제대상 자산 전체를 합산하여 초과투자금액의 유무와 규모를 우선 판단한 후, 산출된 초과투자금액을 각 자산별 초과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최종 추가공제액을 계산함

3. Tax News

- ▶ 금융감독원,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발표
금융감독원은 2026년 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적으로 점검할 회계이슈로 ① 국외 매출 및 매출채권 회계처리, ②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의 적정성, ③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④ 충당부채의 인식·측정 및 우발부채 공시를 제시함

4. Shin & Kim Tax Group Briefing >

관련구성원

이창희

고문

02-316-4164

cheelee@shinkim.com

이정렬

변호사

02-316-4597

jyeollee@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